

알기 쉬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mployment System for Foreign Workers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ents

I. 고용허가제 개요	04
II.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05
•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06
• 외국국적동포 고용 절차(특례고용)	14
•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16
III.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19
IV.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의무	25
V.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27
VI. 고용허가제 Q&A	33
VII. 유관기관 연락처	45



I.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요

I.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요

❖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주요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 결정
-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14일 ~ 7일)부과

2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를 투명화 하였습니다.

-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담당(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3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사업주가 직접 선정

4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합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 금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 적용

▶ 국내에 3년간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원하는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히 확보토록 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기간 3년 만료 후에도 2년 미만(1년10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 '07.3.4.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및 고용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과거와 달리 입국후 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수료한 후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II.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II.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3. 고용허가서 발급 ➡ 4. 근로계약 체결
➡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1. 내국인 구인노력

-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14일,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 ▶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발급요건인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함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미적용 사업장 제외)

3. 고용허가서 발급

- ▶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습니다.

▶ 고용허가 기간

종전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10.4.10 시행된 개정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음.

(재고용의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가능)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체결도 가능하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업장변경 횡수제한에 따른 불법체류 야기, 고용불안정에 따른 생산성 감소 초래, 외국인구직자의 근로계약 기피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필요.

▶ 고용허가기간의 연장(근로계약 갱신)

최초 계약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잔여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II.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체류기간 만료전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사용자는 최소한 계약만료일 7일 이전까지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함.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외국인근로자나 송출국가의 귀책사유(사망, 근로계약 체결 거부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고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불가)

4. 근로계약 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합니다.

▶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 대행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와 구직자간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 외국인구직자의 정보 오류 등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산 서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정정하고 최종 확정 체결함.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신청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사본, 표준근로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사증발급시 필요한 서류(외국인근로자)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 여권 및 사진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 (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절차를 거치고,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 기관¹⁾ 인솔자에게 재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박3일(20시간)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1조)

▶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고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취업교육 기관의 통보에 따라 사용자(또는 위임장을 받은 당해 사업장 소속직원)는 해당 취업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부에 대해 별도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의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7조)

1) 제조업은 국제노동협력원(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중소기업중앙회(필리핀 등 기타 송출국가), 농축산업은 농협, 어업은 수협,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담당

II.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취업교육 개요

- ▶ 취업교육(20시간 이상)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등으로 구성되며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체),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

❖ 취업교육비

- ▶ 일반외국인근로자(합숙) : 제조업 184,000원, 소수업종 204,000원 - 사용자 부담
- ▶ 외국국적동포 : 164,000원(합숙), 122,000원(비합숙) - 외국국적동포 부담
 - ※ 취업교육비는 물가수준 등에 따라 증감 가능
 - ※ 소수업종 :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 취업교육 기관

▶ 일반외국인근로자

■ 제조업(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냉동창고업 포함)

취업교육기관	대상 근로자
국제노동협력원	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출신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중앙회	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이외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우즈벡, 파키스탄 등)

■ 소수 업종

취업교육기관	대상 근로자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취업예정 근로자
농협중앙회	농축산업 취업예정 근로자
수협중앙회	어업 취업예정 근로자

- ▶ 외국국적동포 : 한국산업인력공단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 지원은 산업연수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송출국가(기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비영리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담당하게 됩니다. 산업연수제에서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사후관리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왔던 민간영리송출업체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 ▶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시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위탁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I.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고용허가제 민간업무대행 개요]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업종별 대행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종신청업무를 직접 수행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도입위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내 사용자 각종신청대행업무 및 편의제공업무

고용허가서 작성 지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수령,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및 수령 등 각종 신청대행 업무와 편의제공 업무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대행기관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업무대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냉동창고업), 대한건설협회(건설업)

▶ 송출국가 관련 도입위탁 업무

· 송출국가에 있는 외국인구직자와의 근로계약체결 대행, 사증발급인정서 송출기관 송부, 기타 송출국가와의 협력업무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도입위탁업무를 수행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대행기관을 선택하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출국가 관련 업무를 위탁할 필요는 없으며 각 대행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민간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 범위 및 수수료 기준]

■ 외국인근로자 도입위탁 및 대행업무 범위

업무구분	업무 수행 범위
1. 외국인근로자 도입위탁 40,000원(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계약체결 대행 및 출입국 지원 ㉕ 송출국가 협력(접촉) 업무
2. 각종 신청대행 61,000원(선택, 3년)	<p>〈입국전 각종신청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내국인구인신청 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㉖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p>〈입국후 각종신청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 이탈, 사망, 출국, 근무처변경, 근로계약 종료, 사업장정보(소재지, 대표자 등) 변동 등 각종 신고 ㉕ 고용허가-체류기간 연장신청, 재고용 신청 ㉖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등
3. 편의제공 72,000원(선택,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외국인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지원 ㉕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㉖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㉗ 전용보험(출국,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가입 및 지급신청 지원 ㉘ 기타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 사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인정하는 업무 및 편의제공 사업

II.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 외국국적동포 고용 절차(특례고용)

1. 내국인 구인노력 ➡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3. 근로계약 체결
➡ 4. 근로개시 신고

1. 내국인 구인노력

-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7일~14일)을 해야 합니다.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할 수 없을 경우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²⁾”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 체결

- ▶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동포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부가 지정한 취업교육기관³⁾에서 20시간(2박3일)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구직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필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다.

4. 근로개시 신고

-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업장별 특례고용 가능인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국인근로자 수 변동 등에 따라 추후 변경이 가능함

3)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자 중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무부에 대한 외국인등록 이전에도 취업교육 이수 가능함

※ 법무부에 대한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됨

- 취업교육대상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취업이 허가된 업종 (Q&A 참조)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된 종전 방문동거(F-1-4)자격자도 취업교육을 받은 후 구직신청가능

II.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 취업교육 신청시기 : 입국일에 상관없이 실제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만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됨

※ 다만, 취업교육 이수 후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야 취업이 가능함

-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 ▶ 사용자는 재고용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계속 고용

- ▶ 위 절차에 의하여 재고용 신청한 사용자는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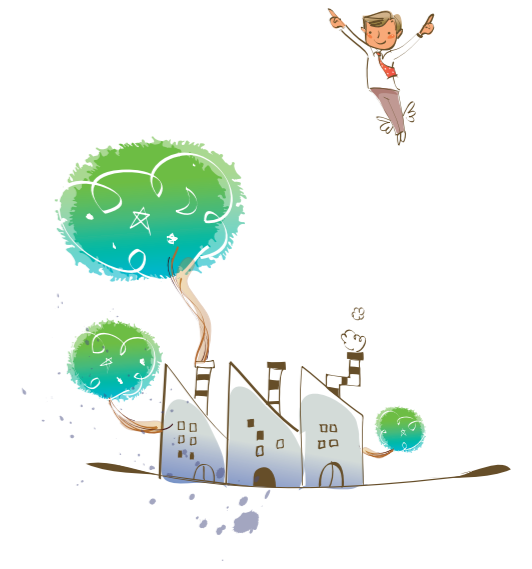
1.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 신청(사용자) ➡ 2. 외국인근로자 재고용확인서 발급(고용지원센터) 및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사용자) ➡ 3. 외국인근로자 계속 고용

1.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 신청

- ▶ 사용자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45일전까지(취업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15일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취업기간 만료 자진출국자 재고용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고용 확인서 발급 및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신청

- ▶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재고용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기간 만료자 재고용 확인서”를 각 1매씩 발급합니다.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III.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갱신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변동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콜레라, B형간염, 결핵, AIDS 등)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한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상 사업장 이동(변경)사유 발생시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 가능

- 사업장 변경 횟수를 산정할 때 기존에는 근로자 귀책인지 사업주 귀책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했으나
- '09.12.10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이동(변경)사유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 20조 제 1항에 따라 고용이 제한된 경우
-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09. 12. 10부터 추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III.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근로자와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용자는 고용허가 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

-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 외교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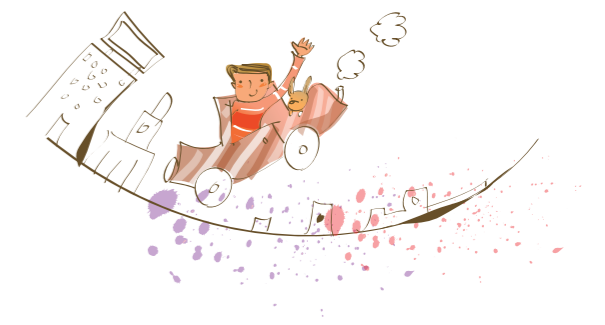
- ▶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 ▶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법질서 확립차원의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질서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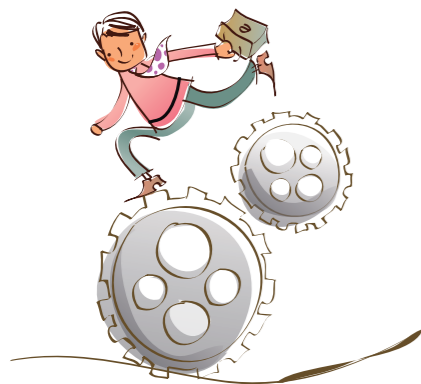
- ▶ 불법체류외국인의 취업과 고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고용주 벌칙

-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할 수 있습니다.



VI.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의무



VI.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의무

1. 사용자

▶ 고용변동사유발생 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이탈, 기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시 등에는 사유발생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근무처의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체류지변경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성명,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V.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V.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

-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출국만기보험 가입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적용제외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1년 미만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만을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그 시점에서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일용,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임시직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동안 근로 후 사업장 변경, 퇴직,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보험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 **가입방법**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납입보험료**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월 임금의 8.3%를 매월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사업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컨소시엄)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주의사항**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근로자가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으로 인한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는 법정퇴직금과 보험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사용자 가입)

-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만을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 **가입방법**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전국 지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 **납입보험료** : 외국인근로자 1인당 연 16,000원

❖ 귀국비용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V.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가입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보험료** : 40만원(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50만원(몽골 및 기타 국가), 스리랑카(60만원)

※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의 경우 초기 입국한 근로자의 취약한 보험료부담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보험료전액을 사용자가 우선 대납한 후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 **취지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 **가입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납입보험료** :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나 30세 기준 남자의 경우 1년에 9,100원입니다.

※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의 경우 초기 입국한 근로자의 취약한 보험료부담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보험료전액을 사용자가 우선 대납한 후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 당연가입 · 고용보험 : 임의가입 · 국민연금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국가별 국민연금 적용 현황]

당연적용국(5개국)	가입 면제 가능국(3개국) (본국에서 이미 가입시 가입면제)	적용 제외국(6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키르기스스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 가입면제 가능국은 본국에서 이미 가입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며, 본국에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의무가입 대상 (본국에서 가입한 경우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경우는 가입증명서를, 중국의 경우는 납무증명서를 관할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 송부하며 면제 신청)



VI. 고용허가제 Q&A



VI. 고용허가제 Q&A

일반사항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인력수급상황 및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의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됩니다.

2. 고용허가제에서는 어떤 국가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나요?

▶ '10.4월말 현재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과 인력송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복수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제조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데 도·소매업으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에 한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합니다. 주된 업종 판단시에는 산재보험의 가입업종의 가입업종이 해당 업종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실사를 통하여 임금총액, 매출액증명서,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4.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승계시 기존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각각의 사업장 합병 후 각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수가 합병된 후의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고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

인원에 대한 계속 고용은 가능합니다.

- 다만, 합병 이후 초과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에는 감소된 인력의 총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관련

5.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을 위하여 제공되는 외국인구직자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알선 받은 구직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성명, 연령, 키, 몸무게, 시력
- 최종학력, 전공, 자격면허
- 혼인 여부 및 색맹 여부 등

6.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국가 대 국가(또는 공공기관)를 통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라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현지 송출국가의 공공송출기관과 협력하여 각각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체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7. 외국인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 종전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10.4.10 시행된 개정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의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가능)

VI. 고용허가제 Q&A

8. 사용자(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지정알선 또는 민간에 의한 알선 가능한가요?

▶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 및 관리되는 일반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민간알선 브로커의 개입 및 임금 상승을 이유로 한 잦은 사업장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서로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

-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의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등 사유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알선이 허용됩니다.

▶ 또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의한 지정알선이 허용되며, 민간에 의한 알선도 허용되기는 하지만 알선을 통한 금품 수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민간영리기관에 의한 알선은 금지됩니다.

9. 외국국적동포도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과거와 달리 취업활동이 매우 자유로워 졌으나, 구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는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취업개시신고 및 근무처 변경 신고)

11.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서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 외국인근로자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교육 관련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외국국적동포는 동포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13. 사용자가 부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를 환급하여 준다고 하는데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로 하여야 하며 통상 교육 수료 2주 후에서 한달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취업교육수료증 사본, 교육비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등입니다.

14. 외국국적동포도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합니까?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VI. 고용허가제 Q&A

15.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을 먼저 해야 취업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당초 방문동거사증(F-1-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외국인등록 후 취업교육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07년부터는 방문취업제에 의한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변경 관련

16.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상 사업장 이동(변경)사유 발생시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횟수를 산정할 때 기존에는 근로자 귀책인지 사업주 귀책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했으나,

- '09.12.10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17. 사업장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월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장 변경신청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합니다.

18.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사업장변경은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 요건이 아닙니다.

19.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시 업종간 이동이 가능합니까?

▶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업종간 이동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구직자가 부족한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당초 제조업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대상자에 한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일반외국인과는 달리 자유로운 업종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20.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가 통합하여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상기 사유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변동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1.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장을 받아 사업장에 찾아온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의 알선장 유효기간이 3일이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장을 받아 사업장에 찾아온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경우 알선장 유효기간 내에 채용(예정)사실을 통보하고 센터를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VI. 고용허가제 Q&A

▶ 또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근로개시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2. 우리 사업장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소개로 타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거나 사업장 변경중인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알선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찾아 왔는데 채용 가능한가요?

▶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이외의 자에게 외국인근로자 알선 등을 허용할 경우 불법브로커 등의 개입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일반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관련

23.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24.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노동부 콜센터, 송출국가 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입국지원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콜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3자 통화 방법으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붙임 참조)

25. 외국인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일시 본국으로 출국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병환 등의 개인사정으로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허가신청서에 사업주의 동의서(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대체인력 신청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후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장 인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출국 3개월 이전부터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7. 우리 사업장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변경되었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변경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의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고용가능 합니다.

28. 우리 사업장은 폐업 후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어찌되나요?

▶ 사업장 합병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는 일반 내국인 근로자에 준해서 인정(근로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인정 여부 결정)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의 변동신고를 해야합니다.

29.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산재를 당하였는데 출국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산재 등으로 더 이상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원래의 체류자격(E-9)을 G-1(기타)으로 변경하면 치료기간 만큼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VI. 고용허가제 Q&A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관련

30.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취업기간 만료일 45일 전

(취업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15일전까지)까지 재고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는 동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나요?

▶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을 확인한 사용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입국 후 해당사업장에 근무 후 사업장 휴 · 폐업, 임금체불 등 적법한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보험 적용 관련

32.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4대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 · 국민 · 고용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33. 출국만기 보험금 신청 및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또는 출국사유(체류기간만료, 자진출국, 강제출국)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업장에게 보험금을 신청하여 자신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보험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34. 보증보험금 신청 및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근로감독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이내에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보험사업자(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 (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I. 유관기관 연락처



VII. 유관기관 연락처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사무소명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관할구역
서울청	서울종합	2004-7396-8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중구, 종로구, 성북구
서울강남	서울강남종합	3468-4773-6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8-10층	강남구, 서초구
서울동부	서울동부종합	2142-84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8 송파T 벤처타워 동관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서울서부	서울서부종합	2077-6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3-5층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울남부	서울남부종합	2639-242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번지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서울북부	서울북부종합	2171-1785-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길 196번지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울관악	관악종합	3282-9284, 3282-9286-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82-4 대룡포스트타워3차 2-3층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춘천	춘천	033)250-1927-8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885-3 넥서스프라자빌딩 2-5층	강원 홍천군, 가평군, 춘천, 화천, 인제, 양구
강릉	강릉종합	033)610-1914	강원도 강릉시 교동 1003-18 신협빌딩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원주	원주종합	033)769-0959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51-4-7번지 2-3층 한신프라자	강원 원주시, 횡성군
태백	태백종합	033)550-8642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5-14	강원 태백시, 삼척시
영월	영월종합	033)371-626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5리 976-1	강원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부산청	부산종합	051)860-2022-3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150-3 롯데골드루즈빌딩1-5층	부산시 부산진구, 연제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동부	부산동부종합	051)760-7214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89-18	부산시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부산북부종합	051)330-9957-8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백포2길 코스모부산빌딩 1-5층	부산시 사상구, 강서구, 북구
창원	창원종합	055)239-0970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27-3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울산	울산	052)228-1914-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04-2	울산시 울주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양산	양산	055)379-2423-4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685-1	경남 양산시
	김해종합	055)330-6423-6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1-5	경남 김해시, 밀양시
진주	진주종합	055)760-6743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127-12번지 안성빌딩 2-5층	경남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	통영종합	055)650-1833-4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0-18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대구청	대구종합	053)667-6043-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대구시 동구, 수성구, 중구, 남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대구북부	대구북부	053)605-6547-9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469-3	대구시 북구, 달서구, 서구, 경북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제외)
포항	포항종합	054)280-30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18-3	경북 포항시, 울릉군, 울진군, 영덕군
	경주	054)778-2519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59-5, 성동새마을금고 3-4층	경북 경주시
구미	구미종합	054)440-3305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2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제외)
영주	영주종합	054)639-1128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 3동 36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안동	안동종합	054)851-8064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715-3번지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인청	경인종합	032)460-4900-4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2번지 대룡빌딩 2-5층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동구, 중구, 남구, 옹진군
인천북부	인천북부	032)540-5718-9 5721-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3-12 영산빌딩 2-5층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수원	수원종합	031)231-7831-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번지 신동아파스텔 2-4층	경기 수원시, 화성시
	용인	031)289-2206-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81-1 강남맨플러스빌딩 4층	경기 용인시
평택	평택종합	031)646-1258 -61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 장당프라자 2층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부천	부천종합	032)320-898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86-3	경기 부천시 전지역
	김포	031)999-0912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04 월드타워빌딩 3-5층	경기 김포시

사무소명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관할구역
안양	안양종합	031)463-0771~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91 안양메세타워 2-4층	경기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광명	02)2688-9604,5065	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463-38 힐팰리스 1-2층	경기 광명시
안산	안산	031)412-695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1	경기 안산시
	시흥	031)496-1908-2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3블럭 1롯데, 정왕프라자 3층	경기 시흥시
성남	성남 이천(출)	031)739-3161~3 031)632-18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9 도촌대덕프라자 4-6층	성남, 이천, 여주
	광주	031)766-0148	경기도 광주시 역동 27-86번지 선화빌딩 3-4층	경기 광주, 하남, 양평
의정부	의정부종합	031)828-0843~6	경기도 의정부시 가흥동 754 신동아 파라디움빌딩 1-2층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구리	031)560-5840-1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0-1 태영빌딩 2층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	고양	031)920-3952-4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736-2, 로데오타워 빌딩	고양시, 파주시
광주청	광주종합	062)609-8662-4	광주 북구 북동 190-1	광주시, 전남 나주시,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제주종합	064)759-8179-80	제주시 이도1동 1690-8번지 대한항공빌딩 5층	제주도
전주	전주종합	063)270-920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평로 79번지	전북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익산	익산종합	063)840-6526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26-1	전북 익산시, 김제시
군산	군산종합	063)450-0633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52-4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목포	목포종합	061)280-0547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121-4	전남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여수	순천종합	061)720-9136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245번지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대전청	대전종합	042)480-6435~6	대전 서구 탄방동 659	대전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금산군
청주	청주종합	043)230-6781-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71-5 월드피아오피스텔 2-4층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천안	천안종합	041)620-7460-4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1437 충남타워 2-5층	충남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충주	충주	043)850-4015~6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507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보령	보령종합	041)930-6257,6286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로 26	충남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태안군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 - 1350 (내국인) / 국번없이 1350 (외국인/ 영어, 중국어)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경기·인천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 / 팩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전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2172-1	T. 032-740-7013 F. 032-740-7010 ※ 출입국사실증명발급 T. 032-740-7393 F. 032-740-7390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공항 출입국심사전담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12-1	T. 02-2664-6202 F. 02-2666-0533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출입국심사전담	서울 강남구 삼성동159-6	T. 02-551-6922 F. 02-551-6934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세종로출장소관할제외), 광명시, 성남시, 안양시, 하남시, 과천시	서울 양천구 신정6동 159-6	T. 02-2650-6211 F. 02-2650-6295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종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12 윤현궁 SK허브빌딩 2층	T. 02-732-6220 F. 02-732-6217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분소	기업투자 체류자격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각종 사실증명 업무만 처리	서울시청 본관 2층	T. 02-2171-2247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72, 서영빌딩 동관 2,3,4층	T. 031-828-9301 F. 031-828-9461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제외), 경기도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31	T. 032-890-6305 F. 032-890-6400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6	T. 031-278-3316 F. 031-278-3326 ※ 출입국사실증명발급 T. 031-278-3311~2 F. 031-278-3325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	오산군용비행장 출입국심사전담	경기도 평택시 송탄우체국 사서함3호	T. 031-666-2677 F. 031-666-7387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평택항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 및 평택-당진항 선박검색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	T. 031-683-6937 F. 031-682-1794
화성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전담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석교리 238-7	T. 031-355-2016 F. 031-355-2018

■ 대전·충청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 / 팩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서산시,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장항항, 보령항 제외)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6-8	T. 042-220-2001 F. 042-256-0496 ※ 체류관련팩스 → 042-255-0496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당진군(평택항 제외), 보령항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97-8 한성빌딩 3층	T. 041-681-6186 F. 041-681-6182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791	T. 043-236-4905 F. 043-236-4907
청주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전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48	T. 043-290-7512 F. 043-290-7590

■ 부산·경남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 / 팩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김해국제공항, 감천항, 다대포항 제외),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17-26	T. 051-461-3091 F. 051-463-7255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울산광역시	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16	T. 052-279-8000 F. 052-279-801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부산광역시 감천항, 다대포항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1 국제수산물도매시장	T. 051-254-3917-8 F. 051-254-3919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제외)	경상남도 마산시 월포동 2-6	T. 055-223-7074 F. 055-223-0748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마전동 535-5	T. 055-681-2433 F. 055-682-2433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경남 사천시동금동 44-4	T. 055-835-4088 F. 055-835-4087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경남 통영시 동호동 171-10	T. 055-645-3494 F. 055-645-3441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심사전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T. 051-979-1322 F. 051-972-1380

■ 대구·경북·강원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 / 팩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제외)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1012-1	T. 053-980-3512 F. 053-980-358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13	T. 054-247-2971 F. 054-247-5352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강원도(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제외)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T. 033-244-7352 F. 033-244-7350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	고성터미널 남북왕래출입국심사전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	T. 033-680-5100 F. 033-680-5102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80 동진빌딩 4층	T. 033-535-5721 F. 033-535-8153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42 속초항만지원센터	T. 033-636-8613 F. 033-636-8615

■ 광주·전라·제주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 / 팩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제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96	T. 062-381-0312 F. 062-381-0018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전남 목포시 옥암동 982-2	T. 061-282-7294 F. 061-282-7293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전라북도(군산시 제외)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산27	T. 063-245-6164 F. 063-245-6165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장항항, 군산 미공군비행장	전북 군산시 장미동 49-32	T. 063-445-2581 F. 063-446-8998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전남 여수시 화정동 944	T. 061-689-5518 F. 061-684-6974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전남 광양시 중동 1359-5	T. 061-792-1139 F. 061-792-9928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673-8	T. 064-723-3494 F. 064-722-4045

■ 주한 대사관

대사관	주소	연락처	
		전화	FAX
주한 몽골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3-5	02-798-3464	02-794-7605
주한 베트남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58	02-739-2065	02-364-1049
주한 스리랑카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29-18	02-735-2966	02-737-9577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02-783-5371-2	02-780-4280
주한 태국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	02-795-3098	02-798-3448
주한 필리핀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1동 34-44	02-796-7387	02-3785-3624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701호	02-574-6554	02-578-0276
주한 파키스탄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4-13	02-796-8252	02-796-0313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110	02-3785-1041	02-3785-1040
주한 중국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54	02-738-1038	02-2253-7524
주한 네팔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44-143	02-3789-9770	02-736-8848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10-22	02-796-4056	02-790-5313
주한 미얀마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	02-790-3814-6	02-790-3817
주한 키르기즈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60-166	02-379-0951-2	02-379-0953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입국지원팀)

대사관	주소	연락처	
		전화	FAX
본부 입국지원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02-3271-9454-8	02-3271-9468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자통화서비스

대사관	주소	연락처
		전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37-1	1644-0644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1-2	031-475-1860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582-3	031-838-9111-2, 031-838-8401-2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경남 김해시 서상동 154-3	055-338-2727, 055-338-1631-2
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경남 마산시 합성동 132-1	055-252-5270-2